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2-019-157호

안 건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2. 11. 30.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면서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필수) (선택)		(유효) (분리)
	합 계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출 경위) 피심인은 를 진행하면서 택배 물품의 수취인 송장을 잘못 부착하였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출고하여 택배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됨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피심인은 이벤트 물품 상품에 잘못 출력된 택배 송장을 부착한 후 이를 파기 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택배 상품을 출고한 사실이 있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7.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7. 29.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잘못 부착한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출고 하여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보호법」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단위: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печ в		1회	2회	3회 이상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번 제75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기준금액의 인 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파기의무 위반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11월 30일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강 정 화 (서 명) 위 원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서 명) 서 종 식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위 이 희 정 (서 명) 원 위 (서 명) 지 성 우 원